

제231회 영등포구의회
2021년도 제1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【최봉희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1. 6. 22.

行 政 委 員 會
專門委員 金 玉 然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341호로 2021년 6월 7일 최봉희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,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규정 정비, 신설된 체육시설 추가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여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조치사항 반영

-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관련 규정 명시(안 제4조)
-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규정(안 제5조)
-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실태 정기점검 의무화(안 제7조)
- 사용료 반환 기준 정비(안 제10조)
-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규정 정비(안 제11조)
-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시 승인 등 공공체육시설 관리 강화(안 제13조)
- 체육시설 위탁계약 해지 규정 정비(안 제16조)

나. 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(안 제9조)

다. 공공체육시설 현행화 및 사용료 정비

- 안양천 체육시설 현행화(안 제3조 관련 별표 1)
-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정비(안 제8조제3항 관련 별표 3)
 - 야구장 전용사용료 성인, 청소년, 어린이 요금 구분
 - 감면대상 유공자 대상자 정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
나. 협의 : 문화체육과

다. 입법예고 결과(2021. 6. 3. ~ 6. 7.)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

국민권익위원회의 「국민생활 속 반칙·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 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」에 따라 이용자가 공평하고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,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보훈관계 법령에 명시하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공공시설 감면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대상자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, 신설 체육시설 추가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
○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제6호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각각 연령으로 구분하여 별표에 따른 사용료 적용시 혼란이 없도록 명확히 하였음.

○ 또한, 공공체육시설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해당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으로

-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특정 단체의 장기간 사용 및 예약과정의 투명성 관련 불만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2019년 10월 「국민생활 속 반칙·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, 교육부에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라 권고하기로 의결하였음.
- 따라서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안 제4조는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개방사항을 명시하고 구민들에게 공평한 이용기회를 주는 것을 규정, 명시하려는 것임.
- 안 제7조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에 관한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활용실태에 관한 정기점검을 반기별로 의무화하였음.
- 안 제10조는 사용료의 반환 시 이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근무일 이내에 환불해주도록 정비하였음.

- 안 제11조에 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였음. 이는 공공 체육시설 내에서 과도한 음주·흡연·취사행위 등으로 건전한 체육활동 분위기가 저해되고 시설 이용이 불편하다는 불만민원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임.
- 안 제13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사용자가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. 이는 시설 입구에 특정 단체의 홍보물이 설치될 경우 지역주민은 사설체육시설로 오인하여 접근하지 못한다는 언론보도 및 불만민원에 따른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임.
- 다음으로 안 제9조는 국가유공자 등의 사용료 감면규정에 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2개 법령에서 정한 유공자만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6월 “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 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”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8개 법률에서 정한 유공자 본인 및 그 가족·유족으로 정비함.
- 개정안에 따른 별표1에서는 안양천체육벨트 구성에 따라 신설된 파크골프장을 추가하는 등 체육시설을 현행화하였음.
- 안 별표3에서는 안양천체육시설 야구장의 전용사용료를 성인과 청소년, 어린이로 요금을 구분하였고, 비고란에 유공자의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실외체육시설에 야간조명을 사용 시 사용료를 30% 가산하여 징수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음.

○ 검토 결과

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고, 보훈대상자 감면대상에 대한 정비 및 신설된 체육시설을 현행화하여 구립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되며, 시행에 맞추어 구민들이 체육시설 사용 시 불편이 없도록 개정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.

참 고 자 료

1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제6조(생활체육시설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제8조(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)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·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67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.

3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86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.

1.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
 2.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.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.
 3.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상 상이등급 1급·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-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. <개정 2016. 6. 21.>
-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4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5조(고궁 등의 이용)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를 준용한다.

5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0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·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6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제8조의3(고궁 등의 이용지원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.

7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제88조(고궁 등의 이용 지원)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.

8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제58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국가유공자"는 "특수임무유공자"로, "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"은 "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"으로 본다.

9
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

제15조(고궁 등의 이용 지원) 의사상자·의사자유족 및 의사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.

10
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

- 제15조의4(고궁 등의 이용지원)**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,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